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

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0년 10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8일

3. 제안이유

- 정부의 「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」과 「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」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적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토록 함

4. 주요골자

-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여 구성토록 한다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적은 안전관리위원회를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며
-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

사료됨

- 다만, 신·구조문 대비표 작성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

의 규정에 명시된 충청북도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신중하게

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(현재)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~ 제6조(생략)</p> <p>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</p> <p>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.</p> <p>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1조~제6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</p> <p>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(검토)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~ 제6조(생략)</p> <p>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<u>실무 위원회</u>를 둔다.</p> <p>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</p> <p>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<u>실무위원회의</u>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.</p> <p>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1조~제6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<u>실무위원회</u>를 둘 수 있다</p> <p>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